

러시아 9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검역) 애완동물 사료 국내 제조업체, 러시아내 수입금지 조치

- 출처: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ΦC-AP-7/2670-7 (2018.09.11.)

- GM 함량 초과를 이유로 고양이와 개용 사료를 제조하는 국내업체가 수입금지 조치를 받음
 - 해당 업체는 모든 종과 연령층의 고양이를 위한 사료, 새끼 고양이용 멀티 단백질 사료, 모든 연령층을 위한 멀티 단백질 사료, 모든 연령대의 개를 위한 양고기 사료에 대해서 수입금지 조치를 받음
 - 금지조치의 사유는 ‘GM의 함유량’으로써, 러시아는 각 함유 성분당 GMO 함량 0.9%까지는 GMO 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. 실수 혹은 기술적으로 제거 불가능한 불순물로 취급하며 제한 없이 사용을 허가함
- 반려동물 산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추세이며, 그중 러시아 애완동물 시장은 세계 갈수록 성장하고 있음
 - 2016년 애완동물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11% 증가하였고, 애완동물 사료시장은 30% 증가했음. 이는 유럽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임
 - 한 비즈니스 컨설팅 업체(<https://bbport.ru/>)의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1년에 소비되는 사료는 약 3억 달러로, 매 5년마다 판매량이 두 배로 증가함. 수입 사료의 점유율이 증가하여 50%를 넘고 있음
 - 러시아의 경우 애완동물 전용 상점이 아니라도 일반 슈퍼마켓에서도 고양이 혹은 애견 사료 전문 코너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애완동물 사료 수요가 고르게 퍼져 있음
 - 러시아인들은 일반 식품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사료 결정에 있어서도 GMO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해당 법률과 러시아 소비자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제품 수출전략을 세워야 함

2. (수출현안)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 (2018 World Food Moscow) 개최

- 출처: WorldFood Moscow 공식사이트 (<http://www.world-food.ru/ru-RU>), VestikKavkaz 기사 (2018.09.17.), aT 사이트 보도자료 (2018.09.18.)

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함께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33개 업체가 참가함
 - 제27회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가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사흘 간 개최됨
 - 65개국에서 약 1500여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자사의 제품을 소개함
 -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(aT), 경기도, 한국임업진흥원,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함께 40개의 부스로 통합 한국관을 구성하여 33개 업체의 우수 농산물 식품과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한국의 맛을 소개함
 - 러시아로 농산물 식품 수입이 금지된 EU 및 미국 농산물 식품의 대체 공급처로서 러시아 시장을 공략하고, 제품의 현지반응을 파악하고 시장조사를 주요 전략으로 함
-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는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옴
 - 본 박람회는 러시아의 농림부, 동식물검역국, 농식품 정책 및 환경관리 연맹위원회, 국가두마 농업문제위원회, 산업조합,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19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옴
 - 2017년에는 62개국의 1516개사가 참여하였고, 여기에는 544개의 러시아 회사, 228개의 중국회사에 이어 한국기업 55개사가 참가하였음. 러시아를 비롯한 90개국의 29,859명이 방문하였으며, 이중 63%는 모스크바와 모스크바 근교지역 거주자, 26%가 기타 러시아 지역 거주자였음
 - 2017년 전시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, 방문객들이 관심을 가진 제품군은 다음과 같음 (중복응답 허용)

제과류, 제빵류	41%
식료 잡화 (설탕, 곡물, 밀가루 등)	32%
차, 커피	31%
수산물	31%
과일, 채소	29%
친환경 식품 (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)	27%
유제품	26%
육류	25%
통조림류	23%
냉동식품, 반제품 식품(인스턴트)	21%
유지류, 소스류	19%
음료	16%
와인	11%

- 제28회 모스크바 국제식품박람회는 2019년 9월 24일에서 27일까지 개최될 예정임
 - 최근 3년간의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, 박람회의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임
 - 특히, 리테일 센터에는 러시아 주요 슈퍼마켓 체인점인 Perekryostok, Edim doma, Magnit, Spar 가 참여하였음. 향후 참여 기업들은 이러한 소매 유통 체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적극적인 진출 계획을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

3. (검역) 벨라루스 및 카자흐스탄 축산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

- 출처: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Φ C-H B-7/22037 (2018.09.05.),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Φ C-K C-7/23179 (2018.09.18.), 러시아 동식물검역국 공문 N Φ C-K C-7 / 23717 (2018.09.25.)
- 벨라루스의 4개 육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한 수입이 일시적으로 제한됨
 - 가금류 소시지에서 항콕시딴증 제제(coccidiostatic), 쇠고기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어 9월 20일부터 해당 기업들의 제품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함
- 해당 조치에 이어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벨라루스 기업에 대한 검역 조치를 강화하여 규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추가 적발함
 - 추가 적발 업체의 적발 사항은 가금류 고기에서 항콕시딴증(robenidine), 항콕시딴증(decoquinate) 검출, 쇠고기에서 테트라사이클린 검출, 가금류 고기 섭취자에게서 호기성, 선택적 혐기성 미생물수 과다로 밝혀짐
 - 항콕시딴증은 가금류 사료에 첨가되는 물질로 육가공 제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. 인체에 독성, 돌연변이 유발, 발암 등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음. 항콕시딴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,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 날 수 있음
 - 항콕시딴증은 열처리를 통해서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검역과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관리가 요구됨
 - 러시아로 육가공품을 수출 할 시에는 사료 첨가물이 완제품에 잔류하는지를 정확히 감독해야함
- 10월부터 카자흐스탄 축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할 계획
 - 2015년 카자흐스탄이 세계무역기구(WTO)에 가입한 이후, 러시아의 통합자동관리시스템 ‘Vetis’ 와 카자흐스탄의 통합자동관리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시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음
 -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의 분석에 따르면, 카자흐스탄의 시스템은 축산물 유통 추

- 적은 가능하지만, 축산물 제품에 대해 발행된 수의학증명서에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가 명시되지 않음. 따라서 명확한 원산지 규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또한 카자흐스탄 북부에 위치한 뉴카슬 지역에서 발생한 가축 질병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가금류와 달걀, 열처리를 거치지 않은 모든 유형의 가금류의 러시아 반입을 금지함
 - 이에 따라 러시아로 수입되는 동물 제품에 발행되는 수의학증명서에는 ‘카자흐스탄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’ 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함.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라벨링) 주류 라벨링 규정 변경

- 출처: 러시아연방정부 행정명령 N1140 (2018.09.27.)
- 2018년 10월 1일부터 주류 라벨링 규정이 변경되어 부착하는 인지에 제품 정보를 기재해야함
 - 주류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알코올 제품의 표면에 특수 인지와 소비세 인지를 부착해야 함
 - 이 인지에는 EGAIS (러시아명: Е Г А И С [예가이스]) 라는 통합국가자동정보시스템에서 식별이 가능한 2차원의 바코드로 구성된 식별코드가 표기되어 있고, 이를 통해 인지 자체와 인지가 사용된 알코올 제품에 대한 식별이 가능함
 -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인지에는 2차원 바코드와 함께 제품의 명칭과 유형, 원산지, 내용물에 대한 정보가 함께 표시되어야 함
 - 또한 특수인지의 가격은 1000개당 1850루블 (한화 31,376원)에서 1690루블 (한화 28,662원)로, 소비세 인지는 1000개당 1700루블 (한화 28,832원)에서 1690루블(한화 28,662원)로 인하됨
 - 그러나 에틸 알코올류, 알코올 함유 제품, 맥주 및 저알코올 음료의 경우 EGAIS에 적용되지 않음
- 러시아 정부는 EGAIS를 통해 주류 유통과 회계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
 - EGAIS는 2018년 2월 1일부터 도입된 정책으로, 이 시스템을 통해 도매유통뿐만 아니라 소매유통 과정에서의 주류 유통의 적법성을 감시할 수 있음. 또한 단위 묶음 별 관리가 아니라 각 병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하므로 더욱 정확하고

체계적임

- 소매 유통업체는 알코올 제품을 입고할 때와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될 때에도 해당 바코드를 스캔해야함
- 특수 인지와 소비세 인지는 다음과 같음 (사진)



사진 출처: <https://m.avtoradio.ru>

- 본 결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며, 기존 인지는 2019년 1월 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함

III 통관문제 사례·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발생일자	통관번호	HS code	상품명(제조사)	중량(kg)	불합격사유	조치사항
2017.1.1						

※ 첨부파일 참조